

【첨부4】특허권 무상이전 계약서(중소기업)

특허권 무상이전 계약서

특허권자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주)0000(이하 '양수인'이라 함)는 특허권의 이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이하 '본건 특허'라 함)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건 특허)

계약의 목적이 되는 '본건 특허'는 다음과 같다.

구분	발명의 명칭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번호
특허				
특허				

제3조(이전의 범위)

'양도인'은 제2조 '본건 특허'의 '양도인' 소유 지분 전부를 '양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

제4조(특허권의 이전 등록)

'양수인'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양수인'의 비용으로 '본건 특허'의 이전등록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은 관련 자료의 제공 등 양도에 관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제5조(특허권 유지비용)

'본 계약' 체결 이후 '본건 특허'의 권리유지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비용(특허료, 추납료, 회복료 등)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제6조(특허권의 권리 등)

- (1) '본 계약' 상의 특허권의 내용 및 권리성 등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양수인'의 책임과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양도인'은 '양수인'의 '본 계약'상 특허의 실시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그 실시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실시료 지불을 포함하는 '양수인'의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 (2) '양수인'은 '본 계약'의 체결에 따라 '양도인'으로부터 '본건 특허'를 이전 받은 후, '본건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할 수 없다.
- (3)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본건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였을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본건 특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양수인'은 '본건 특허'의 소유권이 그 반환을 요청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양도인'에게 이전되도록 하여야 하며 '본건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여 얻은 금원을 위약별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특허권의 이전의 효과)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특허'가 '양수인'에게 이전된 이후, '양도인'이 '본건 특허'와 유사한 기술을 연구 또는 개발하거나 개량·확장·대체·추가하는 경우 '본건 특허'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양도인' 또는 그 승계인, 실시권자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해당 기술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사용)

- (1)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특허권 및 보고서나 문서,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인'으로부터 지득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보도자료,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양수인'은 제1항의 목적으로 '양도인'의 명칭 혹은 '양도인' 소속 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 등에 이를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하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제10조(계약의 효력)

- (1)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다.
- (2) '양수인'이 제4조의 이전등록 절차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본다.
- (3) '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간 특허권 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모든 협의 또는 약정에 우선한다.

제11조(해석 또는 합의사항 이외의 경우)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신의성실에 기초한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날인을 한 후 각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 첨부 :1. '양수인'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양수인'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202 년 월 일

'양도인'

'양수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0000

원장 김 종 남 (인)

대표이사 (인)